

대학혁신지원Ⅱ유형사업단 운영규정

2023. 08. 01. 최초제정

2024. 10. 01. 부분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「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(지방 전문대학 활성화)」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전보건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에 설치한 대학혁신지원Ⅱ유형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사업 추진과 운영에 관한 사업단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사업기간) 사업단의 사업기간은 사업의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기능)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업 목표 및 계획수립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
2. 사업 진행 및 사업 관계부서 지원에 관한 사항
3. 사업 및 예산의 조정 등 사업 전담 관리에 관한 사항
4. 사업 성과관리 및 공유, 확산에 관한 사항
5. 소관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6. 기타 사업운영에 부수되는 사항

제2장 조직 및 운영

제5조(사업단장 및 사업부단장) ①사업단에는 사업단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업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을 두며, 단장을 보좌할 수 있는 사업부단장(이하 “부단장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②단장과 부단장은 대학 전임교원으로 한다.

제6조(하부조직) ①사업단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센터 및 팀을 둘 수 있다.

②제1항의 조직에는 센터 및 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및 팀장을 둘 수 있다.

제7조(행정지원) 사업단에는 행정인력 등을 둘 수 있으며, 제반 사업업무를 분장한다.

제3장 위원회

제8조(위원회) ①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.

1. 대학혁신지원Ⅱ유형 혁신위원회
2. 대학혁신지원Ⅱ유형 운영위원회
3. 대학혁신지원Ⅱ유형 자체평가위원회

②본조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의 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한다.

제9조(대학혁신지원Ⅱ유형 혁신위원회) ①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혁신

지원Ⅱ유형 혁신위원회(이하 “혁신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단, 제8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.

1. 사업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사업비 집행지침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
3. 사업의 추진 결과에 관한 사항
4. 사업의 평가결과에 대한 차기 개선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
5. 사업의 성과지표관리에 관한 사항
6. 사업에 필요한 제도개선 및 대학의 행·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
7. 사업의 성과공유 및 확산에 관한 사항
8. 기타 사업단 운영에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단장이 요청하는 사항

③혁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7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<개정 2024.10.01.>

④위원의 구성은 사업과 관련된 보직자와 산업체 및 정부 또는 지자체 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를 내·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⑤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⑥내부위원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, 보직 임명에 따른 신임 보직자는 위원직을 당연 승계한다.

제10조(대학혁신지원Ⅱ유형 운영위원회) ①본 사업의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Ⅱ유형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추진 사업별 운영 및 주요 성과 관리에 사항
2. 추진 사업별 자체평가결과에 관한 이행 및 환류에 관한 사항
3. 추진 사업별 사업비 점검 및 집행에 관한 사항
4. 기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
③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2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된다.<개정 2024.10.01.>

④위원은 대학 교원 및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.

⑤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 추진 기간의 해당 직무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,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직무 해당자는 위원직을 당연 승계한다.

제11조(대학혁신지원Ⅱ유형 자체평가위원회) ①본 사업의 사업수행실적과 운영 실태를 자체평가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Ⅱ유형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자체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핵심성과지표 및 자율성과지표의 달성정도 확인 및 평가
2. 평가결과 보고 및 환류 이행과정 점검
3. 사업비 집행의 적합성 점검 및 개선

③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9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정한다.<개정 2024.10.01.>

④위원의 구성은 연구개발 및 교육경력이 있거나 경제·산업·언론·정부 및 지자체 기관 등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내·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⑤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단, 외부위원 변경은 본조 제4항을 준용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

⑥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자체평가위원회 결과를 혁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위원회 의결) 위원회(제8조제1항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)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대학혁신지원Ⅱ유형사업 모니터링단) ①본 사업의 운영개선과 만족도 평가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학혁신지원Ⅱ유형사업 모니터링단을 둘 수 있다.

②대학혁신지원Ⅱ유형사업 모니터링단은 사업단장이 별도 구성하여 운영한다.

제4장 사업비 관리

제14조(사업단의 회계 및 정산) ①사업단의 수입·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 계상을 원칙으로 한다.

②회계관련 제반사항은 사업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관리·운영지침과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을 따른다.

제15조(기타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주관기관의 운영규정과 대학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9조, 제10조, 제11조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